

일제피해보상의 현실

변호사 장 완 익

1. 서론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다.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민들은 일본의 압제와 수탈에 시달렸으며 특히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사법부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수많은 소송에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 역시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 방치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과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한일 수교

한일 양국은 1965년 6월 22일 수교하였으며, 이날 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청구권협정 체결시까지 한국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이 계속 변화하였다.

가. 대일배상요구조서

이승만 정권은 1949년 2월 대일 강화준비의 일환으로 배상청구자료를 수집하여 대일배상요구조서를 작성하였다(1권은 1949년 3월 15일, 2권은 1949년 9

월에 완성). 이 요구조서는 '전쟁 배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요구조서 중 제3부는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중에 한국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이중에서 인적피해는 '일본 정부의 관계 법규와 각종 사업장의 제급여규정에 의한 제미수취금과 동원에 의해 받은 당사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나. 한일간 재산청구권요강

한국 정부가 한일 수교 1차회담(1952년 2월 20일)에서 요구한 것으로 전쟁배상적 성격을 띤 요구라기보다는 '민사상의 채권적 요구'의 성격이 강하였다.

청구권요강 제5항은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기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대일배상요구조서에서 '동원에 의해 받은 당사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그 대신 '기타 청구권'이라는 애매하게 표현하였다.

다. 청구권협정

한일 양국은 1965년 6월 22일 3억 달러의 무상 공여 및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유상공여를 내용으로 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

청구권협정의 성격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의 대일 청구에 대한 채무 지불의 성격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배상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965년 8월 비준 국회에서 장기영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는 경제 협력이 아닌 청구권이 주가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배상이다"라고 하였으며, 당시 이동원 외무부장관도 "상제공 3억 달러는 무조건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공여는 일본이 자진하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청구한 결과로써 일본이 지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5억 달러 모두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이다.

1965년 10월 30일 비준 국회에서 시이나 외상은 “청구권문제와 경제협력은 어떠한 법률상의 인과관계도 없다. 총계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경제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여되는 것이다”고 하였고, 대장성 인쇄국의 일한조약과 국내법의 해설에도 ‘제1항에 규정된 5억달러의 자금 협력은 협정의 전문에 명시된 대로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으로 행하여진 것 뿐이다’고 되어 있다.

3. 대일민간청구권 보상 관련 법령

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년 2월 19일 제정, 이하 청구권자금법) :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자금(이하 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한 법

나.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1966년 4월 2일 제정, 이하 특별회계법) : 원화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법

다.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 1월 19일, 이하 청구권신고법) : 대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법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1974년 12월 21일 제정, 이하 청구권보상법) : 한국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법

마. 청구권자금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한다.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청구

권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민간청구권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청구권신고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만을 대일 민간청구권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4. 청구권자금의 사용 내역

가. 무상자금(3억 달러, 청구권협정 제1조 1(a)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은 농업, 임업, 수산업의 진흥과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등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차관자금 (2억 달러, 청구권협정 제1조 1(b)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은 중소기업·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원화자금 : 무상자금 및 차관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금

(1) 징수금 계정 : 무상자금에 의하여 도입되는 물자의 판매수입과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징수된 돈(1,116억원)으로서 민간청구권 보상과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다.

(2) 차관 계정 : 차관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원금 및 이자 수입(474억원)으로 차관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5. 민간청구권 보상

가. 민간청구권 신고

한국 정부는 1971년 5월부터 1972년 3월까지 재산 관계(일본국 발행의 국채, 저축권, 지방채, 사채, 예금, 보험금 등) 97,753건, 피징용사망자 11,787건 등 총 109,540건의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 중 재산 관계에서 4,068건, 피징용사망자 신고분 1,682건 등 5,750건은 증거불충분 및 자료미비로 보상제외하고 569건은 일본에 조회하였다(1976년 4월 30일 현재, 경제기획원이 1976년 발간한 대일청구권자금백서).

나. 민간청구권 보상

한국 정부는 1975년 7월 1일 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재산 관계(엔화 대 원화 교환비율을 1 : 30으로)로 6,640,000,000원, 피징용사망자 9,536건 2,860,000,000원(유족에게 300,000원씩) 등 합계 9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1976년 4월 30일 현재 8,9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실제 지급된 것은 피징용사망자 8,552건).

6. 보상의 문제점

가. 피징용사망자에게만 보상

(1) 피징용·징병 부상자, 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억류자, 시베리아 강제노동 포로, 강제징용노동자 등 수많은 피해자들은 전혀 보상을 못받았다.

(2) 한국 정부는 “1975년에 보상을 실시하게된 것은 청구권자금으로 각 산업의 균형된 개발을 통하여 국민소득을 향상 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

제여서 그간 민간인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미루어 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피징용부상자를 제외한 이유를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당시에 이미 1945년으로부터 25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인이 곤란하여 보상의 정확성을 결하거나 형평을 잃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징용부상자 김성수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1996년 11월 28일 각하 결정) 한국 정부는 답변서를 통하여 “해방된 지 50년이 경과한 지금 당시 피징용부상자의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법률에 의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이 종료되어 이미 증거자료 등을 폐기해버린 피징용부상자도 다수일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들에 대한 부상여부의 입증은 현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과의 형평성이나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정부는 1975년 보상 당시에는 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억류자, 시베리아 강제노동 포로 등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 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한국 정부는 위안부에 대하여는 1993년 6월 11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역시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보상과 관련된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피징용사망자 보상의 문제점

(1) 보상청구권자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직계 가족으로만 한정하여 형제·자매나 삼촌 등이 제외되었다.

(2) 신고 기간이 10개월로 제한되어 보상청구권자임에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3)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로 제한하여 그 이후에 사망한 자를 제외하였다.

(4) 당시까지 생사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에는 현재까지도 생사 확인이 되지 않아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군인, 군속은 생사 여부 확인이 그나마 쉬우나(일본 정부가 조사한 것이 있음) 노무자의 경우는 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약 30개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더 곤란하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생사여부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길(노태우 정권시 명단을 받은 적이 있음)이나 현재는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에 확인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5) 유해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일본에서는 일본인의 유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한국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양국 정부가 소극적이다.

다. 재산관계 보상의 문제

(1) 한국정부는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 등의 미불 임금에 대하여는 재산관계보상에서 제외하였다.

(2) 공탁금

(가) 일본 정부는 1946년 10월 12일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기타의 건'이라는 통달을 통하여 연행조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미불임금(임금, 퇴직금, 저금, 유가증권 등)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케 하였다. 공탁 이유는 주소불명, 통신 불능 등이며 한국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공탁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8년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의 공탁처리에 대하여'라는 통달에서 '시효 완성에 의한 세입 수속을 밟지 말 것 : 또한 이미 세입수속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를 보존하여 둘 것'이라고 지방법무국에 지시하였다.

1991년 6월 10일자 아사히신문은 "법무성이 '시효에 의한 수속을 밟지 못하도록'이라는 통달을 하여 현재까지 33만명분, 약 5천만엔(5,800배로 환산하여 약 2,900억엔)이 보관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나) 군인, 군 속의 미불 임금 등에 대하여도 일본 정부가 1951년 이후 공탁하였으나, 일본 정부가 공탁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다) 일본 정부가 공탁금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에 있는 피해자들 문제가 미해결이기 때문이며, 북한과 청구권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에 국고로 귀속할 가능성이 많다.

7. 피해자들의 요구

가.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

강제 연행자의 명단, 생사불명자에 관한 정보, 사망자의 경우 사망 지역·사망 경위 등에 관한 정보, 여러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미불 임금의 금액 및 공탁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피징용사망자의 유족들은 사망 경위 확인 및 유해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 생사불명자의 경우 생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라. 모든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죄 및 배상, 한국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8. 피해자들의 움직임

가. 입법 청원 운동

(1) 피해자 보상법

한국 정부는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보상만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인 이유와 피해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을 제정하던지 아니면 이들 피해자 모두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법에는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도 종합적인 진상 조사와 피해자별로 필요한 조치(유해 송환, 호적 정리, 치료, 생활 지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범 처벌법

한국 정부는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단 한명의 전범도 처벌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전범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추적,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3) 소멸시효 특별법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효 소멸로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전쟁 피해자들의 민사적인 청구권은 소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멸 시효 대상에서 전쟁피해와 관련한 청구권을 제외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나. 소송제기

(1).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보상만 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내지 '입법부작위위헌확인청구'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2).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에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3)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4). 미국에서 소송 제기

1999년 재미 교포들이 워싱턴, LA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국의 피해자들도 미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중이다.

9. 결 론

일본 정부나 기업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잘못된 역사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을 것이며,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국 정부마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서 있기 보다는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더 고려하는 듯한 입장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애를 너무나 무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을 취할 때, 일본 정부의 태도도 변할 것이다.